

첨부 1

본사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

- **관련근거** : 『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』 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
- **채용인원이 연 6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30% 채용목표제 적용**
 - 대상 : 최종학력 기준(대학원 이상 제외) 대구·경북지역 소재 대학²⁾ 또는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³⁾
- **우대내용** : 각 모집단위 전형별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목표합격률(30%) 미달 시 **합격인원 외 추가 선발** (단, 커트라인 총점 -5점 미만자 제외)
 ex) 필기합격자 커트라인 총점(직업기초능력+직무수행능력+가점) 80점일 경우
 ☞ 채용 목표인원 미달 시 75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으로 인정
- **추가합격자 선정기준**
 - 필기전형 : NCS직업기초능력(50%)+직무수행능력(50%)+가점 합산 고득점순
 - 면접전형 : 직업기초면접(50%)+직무면접(50%)+가점 합산 고득점순
 - ※ 지역인재 추가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
- 본사이전 지역인재 해당자는 대구 또는 경북지역 학교 졸업(예정)자임을 **입사지원 시 반드시 입력(체크)**하여야 하며, 미입력 시 우대불가
- 본사이전 지역인재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다음 장의 설명 참조

2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단, 사이버대학은 제외)

3) 접수마감일(2025.09.11.)기준 졸업(예정)자에 한하며, '대학졸업예정자'란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접수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하고, 면접전형당일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뜻함

< 이전지역 인재 설명 자료 >

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이며, 우리 회사는 대구 또는 경북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**최종적**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

적용예시		
6급 (대졸수준)	① 최종학력인 대구 및 경북 소재인 대학 졸업(예정)자 ② 최종학력이 대구 및 경북 소재인 고교 졸업(예정)자 ③ 대구 및 경북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 ④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자 등	대상
	① 대구 및 경북 소재 고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 졸업(예정)자 ② 타 지역 고교 졸업 후 대구 및 경북 소재 대학 재학/휴학/중퇴자 등	비대상
	※ 대졸수준은 입사 후 처우수준을 의미하며,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	
7급 (고졸수준)	① 최종학력이 대구 및 경북 소재 고교 졸업(예정)자 ② 대구 및 경북 소재 고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 재학/휴학/중퇴자 등	대상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제=8학기, 2년제=4학기 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 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 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 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
- ② 이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

☐ 이전지역 학교

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- 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- *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-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-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-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☐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

- ①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
 - ㉠ 『경찰대학 설치법』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- ㉡ 『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- ㉢ 『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- ㉣ 『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- ②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

□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- ㉠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- ㉡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 - ㉢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 - ㉣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 - ㉤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- ②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- ㉠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 - ㉡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□ 이전지역인재 해당 여부 참고예시 사례

- ①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⇨ **이전지역인재 해당**
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⇨ **이전지역인재 해당**
- ② 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
⇨ **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**
 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
⇨ **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**
 - ※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- ③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⇨ **이전지역인재 해당**
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⇨ **이전지역인재 비해당**
 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**이전지역 인재에 해당**
-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⇨ **이전지역인재 비해당**
 -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⇨ **이전지역인재 비해당**
- ⑤ 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⇨ **이전지역인재 비해당**
 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⇨ **이전지역인재 비해당**
 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- ⑥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⇨ **이전지역인재 해당**
 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⇨ **이전지역인재 비해당**
- ⑦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⇨ **이전지역인재 해당**
 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⇨ **이전지역인재 비해당**